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 성 천**

- I. 문제제기
- II.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 III. 가족복지정책 개념 규정의 문제점
- IV. 가족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V. 가족복지정책 연구의 문제점
- VI. 맺는 글

I. 문제제기

1994년은 UN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였다. 이를 계기로 UN은 (1) 가족에 대한 인식의 제고, (2) 가족 관련정책의 개발, (3) 가족문제의 예방 및 치료 등의 사업을 국가별로 추진할 것을 권했다. 이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약화되거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복지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었다. 이들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 역시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큰데 반하여, 가족은 약화되고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어서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인식적 함의는 「세계 가족의 해」 평가를 위한 학술단체 연대 토론회에서 제시한 “공동 선언문”의 취지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단위인 가족의 보편적 안녕과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의 물질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잘 제시되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94년에 새삼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1980년대 이래 기회가 되는 대로 이

* 이 연구는 1994년도 원광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논문임.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에 대한 문제제기와 가족복지 관련 정책의 제안이 이루어져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¹⁾

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이나 치료책으로 가정의 물질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 없이 부정적이라는데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초와 마찬가지로 1995년 현재에도 한국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나 가족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분야도 그 서비스의 방향이나 질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다. 학술단체의 “공동 선언문”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회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국가, 사회공동체, 교육 및 상담기관, 대중 매체, 기업, 학계 등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학계의 역할에 국한하여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양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가족복지정책이 이론과 실천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며, 한국사회에서 양자는 비슷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개념 규정의 문제와 가족복지제도 및 가족복지정책 연구의 문제점으로 한정하여 분석

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가족복지정책이 나아가 할 길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산업화 이후 세계의 각 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효과적인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이 급변하고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제도를 없애므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고 하였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가족을 없애려는 시도는 얼마 못가서 실패하였고 결국은 가족이 사회체계의 핵심적 단위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단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도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을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을 단위로 접근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본적인 기능을 다른 사회기관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바로 그러한 요인이 된다(S.L.Zimmerman, 1988 : 76). 더욱이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 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 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

1) 1980년대 초반부터 가족정책이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고 있는 한국은 어느 국가 보다도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순위에서 세계 제 122위의 위치에 있는 한국의 가족은 국가가 분담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대부분 맨손으로 떠 맡아 가족성원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절박하기까지 하다.

체제유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가족은 자유주의와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가족은 저임금에 흡사당하는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는 유일한 장소로 기능하였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하였으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국가나 기업의 아무런 지원없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가족의 이러한 막강한 힘과 일방적인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증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가족복지정책의 부재는 그 동안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였던 전통적 가족의 힘과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킴으로써 많은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한 증거들을 가족의 변화와 문제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원의 감소 및 가족유형의 변화로 인한 부양체계의 문제점

1960년에는 5.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의 수가, 1990년에는 3.8명, 2000년에는 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성재, 1992: 40).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 가족의 유형은 2세대 가족이 주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단독가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핵가족은 1970년의 76.8%에서 1990년에 87.7%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92). 이러한 변화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앞으로 가족이 보호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2) 취업모의 증가

여권의 신장과 지위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1991년 현재 47.2%의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 여성의 취업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경제기획원, 「경제활동 인구연보」, 1992) 국가의 노동정책,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활동은 계속 증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여성이 주로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가족내의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호기능이 약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줄 탁아, 탁노, 낮보호, 단기보호, 가정간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이혼율의 증가와 편부모가족 및 分居家族의 증가

서구에 비하면 한국의 이혼율은 아직은 높지 않지만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여서 1992년 현재 12.8%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인구통계연보」, 통계청, 1993). 그리고 최근의 놀라운 사실은 이혼 전의 동거기간이 8.4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점으로 우리의 결혼문화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동아일보,

1994년 9월 3일자).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와 근무형태의 영향으로分居가족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편부모가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도덕가정, 결손가정, 애정결여가정, 갈등가정, 혼육결여가정, 빈곤가정, 해체가정 등의 문제가정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4) 가족과 관련된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최근에는 가족의 빈곤문제보다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그리고 급증하는 존속살해와 폭행의 문제, 비행청소년, 미혼모, 성폭행, 가정폭력, 근친강간, 아동유기, 혼수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가족병리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5)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인 부계 혈연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권력관계, 자녀 및 노부모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부부관계는 가장중심의 권위주의적 관계에서 부부중심의 평등한 관계로 바뀌고 있고(최재석, 1982 : 123), 시부모와 부부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보다 평등주의적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공세권 외, 1990 : 109-132),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도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애정과 상호존중 및 사생활존중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거나 개인과 가족을 다 같이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이기주의와 가족 편의주의를 증폭시킴으로서 가족문제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가족은 과거의 막강한 힘과 장

점을 지녔던 가족이 아니라 긴급 수혈과 보약이 필요한 병약한 가족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가족에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노인과 병약자 및 장애인의 보호, 피부양 성원의 생활보장 등의 기능을 맡아 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가족에게 이러한 역할을 아직도 기대한다면, 그들은 현실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는 적절한 조치도 없이 가족의 윤리적 책임만을 강요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고, 혹사시키는 입장을 지닌 신보수주의자들의 '가족정치(politics of family)'(장경섭, 1994b : 7)의 시각을 지닌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현 한국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시각이 가능해지려면 토플러의 지적처럼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의 수준도 6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 가고 가족도 이전의 전통적 가족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Toffler, 1983 : 235-236).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답답한 일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산업화, 자본주의가 양산한 문제를 약화된 가족이 일차적으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가족의 옷을 벗겨 놓고 감기들지 말고 더욱 건강하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또는 지배계층)는 가족으로 부터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 왔다. 그 결과 한국 가족은 이리저리 힘이 빠지고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우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이러한 가족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여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는 무작정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가족과 국가가 동시에 주고 받는 상호 교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가족복지정책이다.

III. 가족복지정책 개념 규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현실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1970년대 말 가족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한 Kamerman과 Kahn은 가족정책의 개념을 3가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Kamerman & Kahn, 1978 : 4-5), 이러한 관점은 가족복지정책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 관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 개념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복지정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조망되는 경우다. Kamerman과 Kahn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 가족정책이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가족수당, 소득세정책), 인구정책, 결혼가족 등의 부적응 가족을 위한 대책, 아동의 인권 옹호 및 모를 위한 대책 등으로 그 관심의 분야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본다. Zimmerman은 분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에 가족계획, food stamp, 가족소득보장, 탁아, 입양, 가족치료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고용, 인력, 훈련, 주택, 영양, 법, 조세, 에너지, 환경, 교통 등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분야가 가족정책의 분야에 해당된다고 본다(S.L. Zimmerman, 1988 : 20). 이러한 정의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가족복지정책을 편의적으로 분류한 개념규정으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이것을 가족복지정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인력, 훈련, 주택, 영양, 법, 조세, 에너지, 환경, 교통 등을 가족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은 이론적인 개념 규정일 뿐이지 실제로 이들 분야가 가족복지정책에서 생점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이 개념 규정에서는 아동문제, 탁아문제, 조세문제, 소득보장의 문제가 왜 가족복지정책에 해당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이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인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소득보장 등도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Kamerman & Kahn은 가족정책을 의도적이고 명시적인 가족정책과 비의도적이고 묵시적인 가족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Kamerman & Kahn, 1978 : 3). 명시적인 가족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가족문제에는 탁아문제, 아동문제, 가족상담에 의뢰되는 가족관계의 문제, 생활부조, 가족계획의 문제, 주택문제, 조세문제 등이 해당되고, 묵시적인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문제에는 도시계획문제, 이민문제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 정의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Kamerman & Kahn이 명시적 가족정책과 묵시적 가족정책의 대상을 모두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본 반면에 한국의 학자들은 이 중에서 명시적 가족정책의 대상을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최성재; 1992, 김성천; 1984).

(2)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요

구나 문제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 및 가족복지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Kamerman & Kahn, 1978: 6-7).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한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쟁점이 되고 있는 택사사업, 영.미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에서 출현하게 된 가족지원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실재하는 현실을 분석하는데는 유용하나,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에게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가족을 중요한 목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하는 관점 혹은 범주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복지를 여러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관점이나 범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 가족복지정책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는 연구자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관점이나 현실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이나 제도가 이 관점에 입각해서 시행되고 수립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이 가족복지정책은 크게 세가지의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관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가족복지정책이 조망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

이 이 관점내에서도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어서 가족복지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이 혼란스럽게 규정되고 접근되는 이유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제도로써 모든 문제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인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등의 분야와 중첩이 되고 구분이 곤란한 면이 많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은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졌다고 생각한다. 먼저 가족복지의 대상인 가족문제는 가족의 관계나 가족성원의 역할로 대변될 수 있는 가족의 전체성²⁾ *wholeness*이라는 측면과 상관이 있을 때 가족문제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1956년에 미국 가족사회서비스 연합회(Family Social Service Association, 1956)에서 “가족사회사업의 특징은 가족 전체를 문제로 보는 것”이라는 규정을 한 이래(Family Social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pp.320-321) 山崎(山崎美貴子, 1976), 김성천(1989) 등이 가족의 전체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Myrdal도 주장한 바 있듯이 가족복지정책의 특징은 개인과는 대조되는 가족에 대한 강조에 있는 것이다(Myrdal, A. 1968).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가족복지제도와 가족복지정책 관련 연구들 중 다수가 이러한 인식없이 가족복지와 개인복지를 혼동하고 있어서 원초적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2) 가족 전체성 *family wholeness*은 가족을 아동, 노인 등 가족 구성원 개개인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성원의 변화가 다른 가족성원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련된 단위로 보려는 개념이다. 한 예로 아동의 문제는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문제는 부모 등의 다른 가족성원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한국의 가족 복지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공적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재를 보면 가정복지국은 노인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정복지과와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부녀복지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복지과로 편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가족복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가정복지국의 각 과가 해당 개상인 아동, 노인, 여성 등의 개인을 단위로 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을 전체로 놓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복지서비스는 없고, 오히려 한 가족의 성원들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가족의 생활과 관계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 독립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순과 비효과성을 낳게 된다. 가족복지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국 가족복지제도의 실체를 이러한 편재를 그대로 인정하여 연구하다 보면, 아동복지 = 가족복지라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연구는 문제가 있는 한국의 가족복지제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연구는 연구대로 가족복지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해 주는 문제를 갖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꼭 함의를 붙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복지는 가족문제를 개인이 아닌 가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복지서비스와는 엄연한 구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 개개인의 요구와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여건이 우선시되는

가족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가족복지의 대상은 아동, 노인과 같이 가족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여건이 고려되고 가족성원들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적 상황하에서의 가족 빈곤, 실업, 무주택과 같은 환경적 문제, 가족성원간의 갈등이나 변화로 인한 가족성원간의 관계문제, 가족성원의 부적응 등의 가족성원의 내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규정에 부합하는 가족복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김성천, 1989: 121). (1) 경제적 방법: 가족수당, 가족세공제, 가족소득보조, 자립불가능하거나 무의무탁한 노인, 장애인, 유족, 병자 등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2) 행정적 방법: 가족문제대책 추진 위원회의 결성, 가족문제별 가족원조활동 조직의 결성, 가족문제통합서비스 본부의 설치, 가족문제 지도연수체제의 결성. (3) 지역사회조직적 방법: 지역 가족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조사, 가족복지와 관련된 여러 자원의 연계와 조정, 가족복지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 새로운 생활자원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의 개발가능. (4) 사회사업적 방법: 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부상담, 가정생활교육, 가정조성서비스.

IV. 한국 가족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정부와 민간복지기관에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하는 부서는 있으나, 포괄적인 가족복지제도는 없으며, 아동복지, 부녀복지 등의 대인복지 서비스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차원에서 가족복지를 주관하는 행정부서는 보사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 내의 가정복지과이

고, 시도에서는 가정복지국이며, 읍·면·동에서는 가정복지 담당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전달체계의 명칭만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국 산하의 각 과인, 노인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정복지과와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부녀복지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가족복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보사부에서 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안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중점 사업이 홍보, 각종 기념행사, 가족 관련정책의 보완과 개선 및 개발로 되어있다. 이 중 가정관련 정책으로는 기존의 대상별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 가족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족계획 등의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인정석, 1994: 4면). 이 계획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정 관련 정책으로 가족의 전체성이 여전히 고려되지 않는 대상별 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말로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용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은 개인에게 일차적인 초점을 둔 정책이고, 가족계획은 가족의 요구에 기초하는 가족복지정책이라기 보다 가족을 타 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

여서도 체계적인 가족복지제도를 구상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통합하려는 획기적인 시각의 변화나 시도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족의 전체성을 조금은 고려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생활보호서비스, 그리고 노인, 아동, 여성복지서비스와 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가정복지국이 아닌 사회국의 사회과에서 따로 관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이 어떤 철학이나 이론적인 관점을 갖고 계획되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있고, 근시안적으로 대중적인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복지서비스도 극소수의 가족치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명칭만 가정복지서비스라고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꽃꽂이, 서예, 수지침, 컴퓨터교육 등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복지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가 가족의 현실을 무시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가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였지,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가족기능의 의미라든가 가족을 위한 정책목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족복지정책이 비교적 잘 발달된 유럽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국가가 아닌 미국에서도 가족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문제의 증가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가족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가 잉태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카터 대통령은 1976년 캠페인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부가 도와 주어야 할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가족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부르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에 미국 카톨릭 협회, 카톨릭자선협의회, 적십자, 사회사업가협회, 사친회 등이 모여 가족, 정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였던 것이다(S.L. Zimmerman, 1988 : 35-37).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어서 가족복지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사회적인 여론환기나 사회행동의 방법들이 조성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지적해 준 연구도 적었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유지시킨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백보를 후퇴하여 현재 가정복지국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단편적인 정책들을 현실적인 한국적 가족복지정책이라고 볼 때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역시 가족복지정책에도 동일하게 제기된다. 예를 들어 가족복지정책이 예방적인 기능보다는 사후치료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전한 가족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서비스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이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정도로 낮고, 자활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자활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가족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족상담이 제도적으로는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내, 아동 등이 학대나 유기되는 것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등의 많은 문제를 역시 지니고 있다.

V. 가족복지정책 연구의 문제점

가족복지정책의 연구동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맥도널드 McDonald, G.W.의 분류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는 “가족정책 연구를 위한 유형”이라는 논문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다섯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G.W. McDonald, 1979 : 553-554).

- 1) 가족과 정책입안 조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 2) 가족정책에서 개발된 행정과 서비스의 분배를 연구하는 것.
- 3) 가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는 것.
- 4) 주로 가족의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하는 것.
- 5)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

(1) 가족과 정책입안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족복지정책에서 정책입안 조직에 관한 연구는 가족복지제도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에 관계된 연구는 극히 적어서 김성천의 “한국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0)”와 공세권의 “가족정책의 기본 골격과 접근방안(1994)”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김성천은 가족복지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제도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맥락에 속하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

안으로 가정복지부의 신설을 통한 제도의 개편, 기존 가정복지국의 체제를 카두신의 3S모델에 입각한 체제로의 전환 등의 개편안을 서설적인 연구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김성천, 1990). 공세권은 가족복지정책 접근을 위한 조직체계와 가족복지법의 방향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개발원 모델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가족복지 전달조직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공세권, 1994).

사회복지의 응용학문적 성격인 이론과 실제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가족복지정책 입안 조직에 대한 연구가 그간 거의 없었고 최근에야 아이디어의 제공차원에서 연구가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가족복지제도의 올바른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2) 가족복지정책에서 개발된 서비스의 분배에 대한 연구

앞에서 지적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규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복지서비스에 관한 논문과 가족복지서비스에 관한 논문을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논문 주제에 가족이 포함되거나 가족을 고려하고, 가족복지정책이라고 규정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비교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법,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최성재, 1982; 김영모, 1990, 변화순, 1989, 장인협, 1985), 가족수당에 대한 연구(김성천, 1984; 장영인, 1991), 편부모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김정자, 1984, 1988; 유수현, 1986), 소년가장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이배근, 1985; 조봉

희, 1990; 최현숙, 1991), 공적부조제도에 관한 연구(황숙연, 1989; 김영모, 1990), 최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김동배, 1991; 김범수, 1992; 김진이, 1992; 유성은, 1993; 박태영,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89) 등이 이에 해당하는 논문들이다. 이 논문들의 특징은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가족복지서비스로 인정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둔 글들로서 대상 서비스가 진정한 가족복지서비스인가하는 문제는 대부분 고려되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가족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것은 변동하는 가족체계가 정책의 발전과 기능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정숙은 가족제도의 변천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고찰하였고(이정숙, 1982), 김영모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가족목구와 문제의 변화라는 요인과 가족정책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김영모, 1990, pp.104-153). 최성재는 가족정책 시각의 필요성을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 가족원수의 감소, 여성취업률의 증가, 보육대상 영·유아의 증가, 장애인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가족관계의 평등화 경향, 편부모 가정 및 소년가장 가족의 증가 등의 요인을 들어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이유로 제시하였다.(최성재, 1992, pp. 38-44)

(4) 가족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

이 유형의 연구는 가족의 제 구조가 가족성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김정자, 1984,

1988; 유수현, 1986, 최경이 1983), 소년가장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이배근, 1985; 우경연, 1986; 조봉희, 1990; 최현숙, 1991), 노인 가족 부양정책에 대한 연구(김태현, 1989), 도시 빈민가족의 욕구지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이용교, 1987) 등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다.

(5)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황숙연의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황숙연은 한국 가족정책의 분야를 공적부조제도, 아동복지제도, 부녀복지제도로 설정한 후 이러한 제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황숙연, 1987).

이상의 고찰에서 보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가족과 정책입안 조직과의 관계”와 “가족복지 행정조직” 그리고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거나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복지 서비스의 분배”와 “가족의 특성”, 그리고 “가족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비록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연구에 있어서 가족복지 관련 조직과 행정에 관한 연구의 부재,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의 혼란이라는 문제는 한국 가족복지서비스의 현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고 제도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그대로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VI. 맺는 글

Myrdal은 의도적인 가족복지정책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중요한 사회현실 분야를 놓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A.Kahn도 가족이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굳이 이들의 견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대 한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족의 급격한 변화와 심화되는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의 대책으로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시급히 강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 아직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의도적인 가족복지정책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되어야 한국 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나 실천에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의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부터 혼란이 생기므로써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가족복지정책으로 인식되거나 연구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국가적인 낭비라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개인이나 집단 등의 다른 단위가 아닌 가족이라는 단위를 정책적 대상으로 했을 때 의도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가족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족복지정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연구자들은 연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가족과 정책입안 조직과의 관계”와 “가족복지

행정조직” 그리고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거나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복지 서비스의 분배”와 “가족의 특성”, 그리고 “가족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하였던 가족복지정책 관련 조직과 가족복지 행정전달체계 그리고 정부의 의도적, 비의도적 가족 관련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제도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고 본 연구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만을 제시하겠다.

(1) 먼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볼 것인지,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주나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부서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 한 예로 공세권은 시·도 단위의 가족복지 관련 조직 개편안으로 현행 “가정복지국-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체제를 “가족개발국-가족개발과, 가족복지과, 결혼보호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공세권, 1994; 19).

(3) 현재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정책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가족복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한국에는 지금까지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잘 연구하고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심의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종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으로 부터,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 조정능력과 행정적 권한을 지닌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가족복지정책 특별 심의기구”의 설립이 설치되면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공세권의. 1999.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_____. 1994. 「가족정책의 기본골격과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경제기획원. 1992. 「경제활동 인구연보」.
 김동배. 1991.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여름호).
 김성천. 1985. 「한국 가족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6집,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_____. 1989. 「가족복지의 이론체계구성을 위한 일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여름호.

_____. 1985. 「가족정책의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가족수당제도와 아동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9집, 중앙대사회복

- 지학과.
- _____. 1990. "한국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논문집」.
- _____. 1990. 「한국가족복지의 미래」,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1994년, 봄호.
- 김성천. 서울 역. 1990. 「현대 가족복지론」, 이론과 실천.
- 김영모. 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_____. 1983.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모형개발을 위한 시론」, 사회개발논총 제5집, 중앙대학원.
- 김인숙. 1983. 「요보호 모자가족의 역할기능의 관한연구-시설보호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
- 김정자. 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6(3).
- 김정자 외. 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진이. 1992. 「도시재가복지서비스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1989. 「노인가족부양정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가을호.
- 동아일보. 1994년 9월 3일자.
- 박태영. 1992.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여름호.
- 변화순. 1989.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7(1).
- 보사부. 1993. 「93 주요업무자료」.
- 「세계 가족의 해」, 평가를 위한 학술단체 연대토론회, 「공동선언문」, 1994.
- 우경연. 1986. 「청소년 가장가정의 지원에 관한 연구」, 송전대 석사논문.
- 유성은. 198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유수현. 1986.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 이배근. 1985. 「소년가장의 현황 및 대책 방안」,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재. 1985. 「미혼모 발생요인과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란. 1992. 「한국재가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정숙. 1982.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천과 가족복지의 정책적 고찰」, 사회복지, 7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혜원. 1993. 「영국과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가을.
- 인경석. 1994. 「94년도 보건사회부시책방향」 사회복지신문, 2월 14일자.
- 인구통계연보. 1993. 통계청
- 장경섭. 1994a. 「사회주의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_____. 1994b. 「가족복지의 여성정책적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 장영인. 1991. 「가족수당제도의 발달과 한국에서의 그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봉희. 1990. 「소년가장가정의 실태와 대모제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최경이. 1983. 「한국여성가구주 가족의 문제와 보호대책」, 사회개발논총, 제5집,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 최성재. 1992. 「가족과 사회정책」,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_____. 1992. 「복지국가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복지국가와 가족, 가족학회학술대회 자료집. 5월.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최현숙. 1991. 「아동가장의 실태와 복지대책」, 한국의 사회복지 1, 이론과 실천.
- 변화순 외. 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가족학회 편. 1993. 「가족학」, 하우.
- 한국여성개발원. 1989. 「재가봉사서비스제도에 관한 연구」.
- 황숙연. 1987.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L.Schneiderman. 1992. 「미국의 복지국가 : 가족적 관점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 국제학술회의.
- Toffler. 1983. 「제 3의 물결」, 학원사.
- 野山. 1994. 「일본에 있어서 가족의 동향」,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봄호.
- 省部猛利. 桂良太郎. 김성천. 서윤(역). 1993. 「현대가족복지론」, 이론과 실.
- A.Kahn & S.Kamerman, *Family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8.
- G.W.McDonald, *Typology for Family Policy Research, Social Work*, Vol. 24, No.6, 1979.
- A.Myrdal, *The Nation and the Family*, Cambridg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8.
- J.R.Seaberg, *Family Policy Revisited : Are We There Yet?*, Social Work, NASW, Volume 35, Number 6, 1990.
- J.Sullivan, *Sosial Problems : Divergent Perspectives*, John Wiley & Sons, N.Y., 1980.
- S.L.Zimmerman, *Understanding Family Policy*, Sage Publications, Inc., 1988.